의안번호	제 294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5월 31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294

제출연월일 : 2023년 5월 31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은 기존 본관과 동물사육사 건물이 지반 침하로 건물균열이 계속되고 있고, 전문기관 검사결과 건물의 균열 및 변형이 허용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진단되어

○ 청사 안전성 확보와 협소한 업무공간을 개선하고자 본관 및 동물사육사 건물을 철거하여 지상 2층, 연면적 650㎡의 규모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2.7억원임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은 도청 주변 근대문화유산(충북문화관, 우리예능원 등)과 당산공원을 연계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구도심 환경 개선과 다양한 전시·문화행사를 통한 관광객 유치가 기대됨

○ 이에 당산공원 내 국유지 6필지, 39,183.6㎡를 34.8억원으로 매입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하고자 함

○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산의 취득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일반회계**

○ 위　　치 : 제천시 고암동 145-20번지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내)

○ 사업기간 : 2023. ~ 2024.

○ 사업규모 : 연면적 650㎡ / 지상2층 * 부지면적 6,411㎡

- 1층 : 사무실, 실험실, 민원실 등
- 2층 : 소장실, 세미나실, 회의실, 서고, 부대시설 등

○ 사 업 비 : 3,262백만원

- 시설비 : 3,198백만원(공사비, 용역비, 조사 및 측량비)
- 감리비 : 53백만원(감리비, 철거공사 감리비)
- 시설부대비 : 11백만원(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당산공원 토지 취득≫ **일반회계**

○ 목 적 :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 매입대상 :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2, 109-4, 109-125, 109-138, 109-143, 109-190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

○ 매입규모 : 토지 6필지(39,183.6㎡)

○ 사 업 비 : 3,478백만원(토지매입비) * 탁상감정가(29억원)+20%가산

3.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4	9,311	3,708,550	6	39,183.6	3,478,248	10	48,494.6	7,186,798
		건물	5	13,050	31,600,430	1	650	3,262,589	6	13,700	34,863,019
		기타									
	매입	토지	4	9,311	3,708,550	6	39,183.6	3,478,248	10	48,494.6	7,186,798
		건물	5	13,050	31,600,430	1	650	3,262,589	6	13,700	34,863,019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47	45,630.7	10,270,674				47	45,630.7	10,270,674
		건물									
		기타									
	매각	토지	47	45,630.7	10,270,674				47	45,630.7	10,270,674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번호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재지	면적					
계	토지	6필지	39,183.6	3,478,248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매입
	건물	1개동	650	3,262,589	2024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신축
	기타							
1	토지							
	건물	제천시 고암동 145-20	650	3,262,589	2024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청사 신축		신축
	기타							
2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2	3.3	178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산림청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4	38,593.8	3,380,817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보훈처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25	58.2	34,920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보훈처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38	451.2	54,144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보훈처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43	43.8	4,205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보훈처	
	토지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109-190	33.3	3,984	2023	복합문화공간 조성	보훈처 (지분 1/4)	

공유재산관리계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건,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득	계	토지									
		건물	2	1,980	10,216,521				2	1,980	10,216,521
		기타									
	매입	토지									
		건물	2	1,980	10,216,521				2	1,980	10,216,521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	토지									
		건물									
		기타									
	기타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 령 발 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 ·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 ·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5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